#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4차) 물질
-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 동물대체시험 지원 방안 >

◈ 동물대체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 동물대체시험 지원이 가능한 항목(7개)-붙임2 참조 >

- ①급성경구독성, ②피부과민성, ③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④피부 자극성/부식성, ⑤눈 자극성/부식성, ⑥추가유전독성, ⑦급성흡입독성
- [①급성경구독성, ②피부과민성, ③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이미 동물대체시험이 상용화되어 생산비용이 일반시험보다 저렴한 항목으로 동물대체 시험에 한하여 지원
  - ※ 다만, 해당물질 특성상 동물대체시험으로 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에만 일반시험 지원검토
- [④피부 자극성/부식성. ⑤눈 자극성/부식성]
-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일반항목 하향 조정)
- 눈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일반) 60%.
- 피부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또는 95%\*. (일반) 60%
- \* 피부 자극성/부식성(과학원고시 제20항 및 제27항) 모두 시험한 경우 95% 인정
- [⑥추가유전독성, ⑦급성흡입독성]
-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 5. 22(월) ~ '23. 6. 30(금)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 (신청서류)

	제출서류	구분				
구분 		생산 완료	생산 중	비고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0	0	신청시스템 내 작성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	0	0	붙임 3 참고		
3	협의체 협약서	0	0	기제출된 자료로 선정평가 예정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0	0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0	0	시험계약서(컨설팅-GLP)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수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 필수(생신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시험방법(OECD TG 등) 필수기재		
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_	0	선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 계획서(최종본) 제출		
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의 경우에 한함)	0	0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①②③에 대해 일반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국문본)	0	추후 제 <i>출</i>	_		
9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0	추후 제 <i>출</i>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		
10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지료	요청시				

- O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선정결과)** 7월 중 **홈페이지**\* 게시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O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 확인사항

- O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O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O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O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O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사항

- 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 ③ 협약당사자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 ④ 협약당사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동등록서류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 ⑦ 시험계획서(최종본)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⑧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기한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함
- ⑨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 ⑩ 협의체-GLP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 ① 최종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 항목은 선정 후 2년 이내 제출

##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61, 6788, 6759, 6762		

- ※ 붙임: 1. 지원대상 시험항목 1부.
  - 2. 동물대체시험법 목록 1부.
  - 3.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1부. 끝.

# 붙임1 지원대상 시험항목

시험필수 15항목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10항목			
1. 옥탄올/물분배계수	16. 본질적분해성			
2. 어류급성독성	17. 분해산물의 확인			
3. 이분해성	18.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급성독성	19. 물벼룩만성독성			
5. 담수조류 생장저해	20. 육생식물 급성독성			
6. pH에 따른 가수분해	21.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급성경구독성	22.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복귀돌연변이	23. 흡착 및 탈착			
9. 피부 자극성/부식성	2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0. 피부 과민성	25.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11-1. 급성경피독성				
11-2. 급성흡입독성				
12. 눈 자극성/부식성				
1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1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15-1. 반복투여독성(28일)_경구				
15-2. 반복투여독성(28일)_경피				
15-3. 반복투여독성(28일)_흡입				

- ※ 항목 11, 15 는 택일, 는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임
- ※ '병합 생식/발달 독성 선별 시험 및 반복투여독성시험'의 경우 시험필수 항목의 '반복투여독성'으로 인정

# 붙임2 동물대체시험법 목록

구분	유해성 시험항목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2021.12.14.)		OECD TG	국내GLP 지정여부
		제15항	급성 경구독성시험(고정용량법)	420	0
	급성 경구독성	제17항	급성 경구독성시험(독성등급법)	423	0
		제26항	급성 경구독성시험(용량고저법)	425	0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 국소림프절 시험법: BrdU-ELISA	442B	0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 국소림프절 시험법	429	-
대체시험	피부 과민성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 국소림프절 시험법: DA	442A	-
중점지원*		제36항	화학피부과민성시험: 펩타이드 직접 반응도 분석법(DPRA)	442C	-
		제37항	생체외 피부과민성시험: ARE-Nrf2 Luciferase 시험	442D	-
		제60항	생체외 피부과민성시험	442E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제23항	유전독성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시험)	473	0
	피부 자극성/ 부식성	제20항	생체외 피부 부식성 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	431	0
		제27항	생체외 피부 자극성 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439	0
		제19항	생체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 시험)	430	-
		제46항	피부부식성평가를 위한 생체외 장벽막 시험	435	-
대체시험 우선지원	눈	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 시험	437	0
및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	492	0
지원비율 조정		제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 시험	438	-
	자극성/	제56항	눈 부식성 및 자극성 플루오레세인 누출 시험	460	-
	부식성	제63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시험)	491	-
		제68항	비트리겔(Vitro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	494	-
		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시험법)	496	-
	추가 유전독성**	제62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490	0
대체시험		제28항	유전독성시험(생체외 포유류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476	0
우선지원	급성 흡입독성	제38항	급성흡입독성- 급성(독성등급법)	436	0
		제59항	급성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433	0

- \* 대체시험이 불가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물시험(in vivo) 지원여부 검토
- \*\*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의 경우 복귀돌연변이 및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 증명시 추가 유전독성 대체시험 제62항, 제28항 시험으로 제출 가능(유전독성시험 평가에 관한 지침, 과학원, '21.2)
- ※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의 대체시험 시험결과 판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시험(in vivo) 추가지원여부 검토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 ③ 협약당사자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 ④ 협약당사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동등록서류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 ① 시험계획서(최종본)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⑧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기한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함
- ⑨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 ① 협의체-GLP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 ⑪ 최종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 항목은 선정 후 2년 이내 제출

2023년 월 일

위 신청인 상호명:

대표자: (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